



상반기 재해자수 증가, 재해율 감소

지난 9월 12일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재해현황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의 산업재해자는 총 44,726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330명(0.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재해율은 0.28%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0.02%p 감소했다.

전체 사망자수는 1,06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5명(3.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사망만인율은 0.68로 전년 대비로 0.0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사고 재해자수는 41,106명, 업무상 질병재해자수는 3,6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27명(0.8%), 3명(0.08%)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자는 제조업(15,781명, 35.3%), 5~49인 사업장(22,051명, 49.3%), 50세~54세 근로자(7,623명, 17%), 전도재해(9,463명, 21.2%), 요통질병(1,782명, 4.0%)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4.2%), 운수창고통신업(-5%), 광업(-14%) 등에서 감소했으며, 건설업(10.7%), 제조업(0.6%), 임업(1.8%), 전기 가스수도업(33.3%) 등이 증가했다. 또 규모별로는 5인 미만(-4.3%), 1,000인 이상(-4%)에서 감소했고, 5~49인(3.1%), 50~99인(7.3%), 100~299인(3.6%), 300~999인(6.3%)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재해의 발생형태별로는 전도(-7.1%), 충돌(-9.2%), 협착(-1.2%), 교통사고(-2.3%) 등이 감소, 추락(9.3%), 절단·베임·찢림(10.6%), 낙하·비레(8.4%) 등이 증가했다.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관리 미흡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는 총 35,682건이었으나, 실제 작업에 대한 고용부의 지도점검을 받은 현장은 2,550개소(7.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점검율은 서울청 9.9%, 부산청 8.6%, 대전청 7.8%, 중부청 6.6%, 광주청 5.1%, 대구청 4.6% 등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수가 적어 전수조사가 사실상 힘들고,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업체점검을 병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라며 “하지만 전체 위반사업장은 1.295개소로 위반율이 50.1%라는 점에서 보면, 석면 해체 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높은 위반율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 의원은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 점검이 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특정시기에 현장점검이

집중되면 관련업체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피해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중 수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산재다발업체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발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을 지난 9월 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2011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 232곳 △2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20곳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6곳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 1곳 등이다. 이번 공표명단에는 강릉 오봉저수지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4명)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산재 다발업체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회에 걸쳐 총 1,828곳을 공표했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명단 공표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사업주는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기록·유지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14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0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해야한다. 또 연구주체 장은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보완공사 관련자료, 화학물질(약품) 대장,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등을 정리·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주체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침은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시행방법도 명시했다. 우선 일상점검을 살펴보면 연구실책임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사용되는 기체·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이때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 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상점검 실시내용에는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방호장치 설치상태 등이 포함되나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다.

특별안전점검은 연구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파괴검사 안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 실시

방사선을 이용해 선박이나 철강제품의 균열 유무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이 전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9월 11일 한국비파괴검사협회(회장 손태순)와 ‘비파괴검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최근 비파괴검사 근로자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울산지역에서만 비파괴검사 근로자 3명이 방사선 과다 피폭에 의해 사망한 바 있다. 이들 사고 외에 원자력안전법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기준인 2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근로자수는 2007년 48명, 2008년 115명, 2009년 94명, 2010년 140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공단은 방사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과 비파괴검사협회는 협약에 따라 △비파괴 검사업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기술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파괴검사 업체의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발주업체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비파괴검사 업무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검사업체는 엄격한 피폭예방 조치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방호대책에 따른 안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 건설 전 교통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5km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 하겠다고 9월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과 개선대책만 수립되면 따로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제를 없애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설계 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 요인을 발굴·개선하게 된다. 국도는 5km 이상, 지방도는 3km 이상, 시·군도는 1k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적용된다.

서비스업 외국인 재해자 80%, 한국계 중국동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동포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재해자 10명 중 약 8명(81.9%, 485명), 도·소매업의 경우도 10명 중 7명 정도(71.6%, 86명)가 한국계중국인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인 재해자가 음식업에서 89명, 도소매업에서 17명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한국계 중국인의 재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쉽게 알 수 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음식업에서는 넘어짐 사고(150명)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감김·끼임(116명), 이상온도(116명), 베임(104명), 교통사고(30명), 작업관련 질병(14명) 등의 재해도 많이 나타났다. 도·소매업에서는 감김·끼임 사고 35명, 추락 19명, 베임 17명 넘어짐 10명, 낙하비레 13명, 교통사고 6명 순이었다.

사업장에서는 이들 외국인들의 재해유형 등을 꼼꼼히 확인, 그에 맞는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도 최근 외국인 재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일환에 따라 재해 사례와 안전수칙을 담은 내용의 안내서 9만 6천부를 제작, 한국계 중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포기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외국인 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안전보건 교육강화, 기술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